

전형별 가점기준(계약직)

구분	우대사항		적용전형		부여가점 (만점기준)		비고
			서류	면접			
특별가점	취업지원 대상자(법정)*		○	○	5% 또는 10%		관련법률에 의한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(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가점은 시간선택제 채용에 한함)
	장애인		○	○	5%		
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	○	-	5%		
	다문화가족의 자녀		○	-	5%		
	북한이탈주민		○	-	5%		
	경력단절여성		○	-	5%		
	자립준비청년		○	-	5%		
일반가점	한국사 능력검정		○	-	5%		3급 이상
	중소기업 근무경력		○	-	2%		실근무경력 만3년이상에 한함
자격증가점	전문자격증 보유자		-	○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기술사, 건축사	5%	공단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응시한 자에 한함
	일반자격증 보유자		-	○	기사, 기능장	3%	
					산업기사	2%	
					기능사	1%	
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	2023년, 2024년 인턴	우수인턴	○	-	서류전형 면제, 필기전형 2%		인턴수료(만근) 후 2년 이내 1회
		인턴수료자	○	-	서류전형 5%, 필기전형 2%		인턴수료(만근)자에 한함

- 1)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
- 2)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
- 3)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
- 4) 특별가점,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
- 5)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수료(만근)일로부터 2년간 부여하되, 우수인턴의 우대가점은 인턴수료(만근) 후 2년 이내 1회로 한정

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(30%)

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(보훈 전형은 제외)하고, 전형단계별 만점의 40%미만 득점자에게는 미부여(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 미만 득점 시 미부여)